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93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어기구·박용갑·박수현

박희승 • 박균택 • 손명수

이개호 · 한정애 · 오세희

김종민 · 이성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대응 등을 통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,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

그런데 최근 경북, 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 주민, 진화대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, 시행 예정인 이 법률에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이나 산림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 또한, 관할구역 의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산림재난 관련 교육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법률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등 시행예정인 법률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

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제1항제5호 신설).
- 나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법률 제 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의2 신설).
- 다. 산지 외의 지목도 '산사태취약지역'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산사 태취약지역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토지 매수·교환 범위를 '산사 태취약지역 산지'에서 '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'로 확대함(안 법률 제 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제1항).
- 라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(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9조의2(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,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(이하 "산림재난 대피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지 침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배포 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"를 "특별자치도지사"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전단 중 "산지(입목·죽을 포함한다)"를 "토지(산지의 입목·죽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5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(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) 제7조(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)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 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 지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 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・시 행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 <신 설> 고 예방에 관한 사항 5. (생략)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~ ⑧ (생 략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9조의2(산림재난 대비 주민대 피계획 수립 등) ① 특별자치 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 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 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 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 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

제17조(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 한 실태조사) ① (생 략)

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

- 지구의 지정, 대피소 및 대피로 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 민대피계획(이하 "산림재난 대 피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 행하여야 한다.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-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 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특별자치시장·특 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 청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
 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
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 다.

제17조(산불	· 발생	위험지역	에 다
한 실태조	(사)	(현행과	같음)

2	

만,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
장 · 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
자치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같
다)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또는
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③ (생략)

제26조(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 · 교환) ①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 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 (입목·죽을 포함한다)나 산사 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 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수 · 교환의 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- <u>특별자치도지사</u>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
등 매수·교환) ①
<u>E</u> N
<u>(산지의 입목·죽을 포함한다)</u> -
 ① /처체되 가 O \
② (현행과 같음)

제56조(산림재난방지 교육) ① · 제56조(산림재난방지 교육) ① · ② (생 략)

<신 설>

<u>③</u>· <u>④</u> (생 략)

- - 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 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④· 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)